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44
----------	------

2020년 9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 외 42명
- 나. 발 의 일 : 2020년 7월 13일
- 다. 회 부 일 : 2020년 7월 14일
- 라. 상 정 일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9월 3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윤기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5항 신설).
-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제18조제4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 다. 입법예고(2020. 7. 17. ~ 2020. 7. 24.)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2016년 9월 29일 신설)에 따라 서울시에서 ‘2019년 시행한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운영 용역’을 통해 실시한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서울시 자치법규 점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1) 차별적 용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2)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3)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4)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5) 반환권 제약(공공시설 이용 시 반환조항 미비)
	6) 구제권 제약(과태료 부과징수 법적 근거, 구제절차)
시민참여 보장	7) 개인정보보호권 보장
	8)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
	9)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 주요 내용은 사용료 반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용료 관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 ④ (생략) <신 설>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 서울시는 8개의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청년공간 총 예약 건수는 2,984건이고, 총 취소 건수는 1,141건(39.4%)로, 취소 비율이 높은 편임.

〈최근 3년간 무중력지대 사용료 반환 현황〉

(단위 : 천원, 2020.7월말 기준)

구분	연도	예 약		취 소			실제 이용		사용내용 (예, 대관료 등)	
		건수 (건)	납입금 (천원)	건수 (건)	반환금 (천원)	비율	건수 (건)	이용수입 (천원)		
1개소 월평균		24.3	492	9.7	39.9%	148	30.1%	14.5	344	'19년 이전 개관한 5개소(대방, 양천, 도봉, 성북, 서대문)에 대한 '19년 월평균 반환내역
합계	총계	2,894	53,955	1,141	39.4%	15,198	28.2%	1,753	38,757	
	2020	714	10,335	224	31.4%	2,488	24.1%	490	7,847	
	2019	1,677	33,807	647	38.6%	8,881	26.3%	1,030	24,926	
	2018	503	9,813	270	53.7%	3,829	39.0%	233	5,984	
대방동	2020	80	633	14	17.5%	45	7.1%	66	588	대관료 수입
	2019	330	5,971	150	45.5%	2,572	43.1%	180	3,399	대관료 수입
	2018	309	4,432	181	58.6%	2,629	59.3%	128	1,803	대관료 수입
양천	2020	464	6,156	163	35.1%	2,423	39.4%	301	3,733	대관료 수입
	2019	856	10,646	425	49.6%	5,825	54.7%	431	4,821	대관료 수입
	2018	132	1,565	85	64.4%	1,056	67.5%	47	509	대관료 수입
도봉	2020	14	580	0	0.0%	0	0.0%	14	580	대관료, 입주단체 임대료
	2019	97	4,078	1	1.0%	66	1.6%	96	4,012	대관료, 입주단체 임대료
	2018	83	3,131	0	0.0%	0	0.0%	83	3,131	대관료, 입주단체 임대료
성북	2020	8	124	-	0.0%	-	0.0%	8	124	대관료 수입
	2019	119	5,073	2	1.7%	36	0.7%	117	5,037	대관료 수입
	2018	32	1,131	1	3.1%	12	1.1%	31	1,119	대관료 수입
서대문	2020	5	104	-	0.0%	-	0.0%	5	104	대관료 수입
	2019	52	3,762	4	7.7%	382	10.2%	48	3,380	대관료 수입
	2018	30	2,685	3	10.0%	132	4.9%	27	2,553	대관료 수입
강남	2020	15	446	-	0.0%	-	0.0%	15	446	대관료 수입
	2019	50	1,787	-	0.0%	-	0.0%	50	1,787	대관료 수입
	2018	-	-	-	-	-	-	-	-	-
광진	2020	36	367	-	0.0%	-	0.0%	36	367	▶ 대관료 수입
	2019	-	-	-	-	-	-	-	-	▶ 예약 후 방문 시 사용료를 받아 취소 반환금 발생 안 함
	2018	-	-	-	-	-	-	-	-	-
영등포	2020	92	1,925	47	51.1%	20	1.0%	45	1,905	대관료 수입
	2019	173	2,490	65	37.6%	0	0.0%	108	2,490	대관료 수입
	2018	-	-	-	-	-	-	-	-	-

- 청년공간 예약 취소시 당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해 왔으나, 동 조례에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완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사용자가 개방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 다만, 청년청에서는 그동안 청년공간별로 반환율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규정없이 공간별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일방적인 노쇼(예약 부도) 등은 선량한 다른 시민의 이용을 제약할 수 있는바, 취소시점에 따라 반환율을 달리 정할 필요성 및 통일된 반환율 규정 적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청년공간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환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취소 시점에 따라 반환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청년청 수정의견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④ (생략)  〈신설〉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u>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u>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취소 시점에 따라 반환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644
----------	-------------

제안연월일 : 2020년 9월 3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취소 시점에 따라 반환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5항 중 “반환한다.” 를 “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 ④ (생략)  <div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div>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u>반환한다.</u>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u>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u>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 ④ (생 략) <u>&lt;신 설&gt;</u>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u>